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9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19노505 업무방해
피 고 인	최선화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정162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중구 ○○로○길 ○○동 ○○아파트 제2관리

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508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관리사무소의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진입하여 핸드폰으로 업무 중인 박○○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를 말리는 박○○ 등에게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제한구역인 통신실(MDF실)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박○○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그 경과를 보면,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508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박○○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 47초에 불과한 점, ③ 박○○은 ‘입주민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고 있다,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이 1분 47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동안 어떠한 위력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박○○ 역시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REDACTED]

[REDACTED] 핸드폰을 꺼내 든 것을 기화로 즉시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집에 가려던 피고인은 박○○이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앞서 회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 남○○(SH공사 직원)을 데리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생을 데리고 사무소 내에 들어갔다가, 동생이 혼자 나오자 따라 나와 동생을 데리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안에는 김○○, 남○○, 박○○, 그리고 한전에서 나온 직원이 함께 있었던 점, ⑦ 그 무렵 피고인이 ‘비리가 계속되고 있으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⑧ 피고인은 통신실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경찰관이 도착한 뒤 경찰관에게 입회하여 통신실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⑨ 그 무렵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 제출의 사진들을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박○○, 김○○, 그 옆에 서 있는 남○○의 모습이 매우 평온하거나 웃고 있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그 시기에 어떠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 중에는 김○○, 박○○이 전기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나온 한전 직원과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전자식계량기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 다행이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에 비추어 당시 어떠한 위력이 행사되고 있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함께 있던 피고인의

동생이 동조하거나 말리는 등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거나 혼자 나왔다가 다시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는 등의 모습에서 전혀 그러한 조급함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회의를 한 후 내려와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바깥에 모여 서 있던 관리소장, SH 직원 등 다른 사람들도 웃으면서 가끔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안쪽을 훑어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함 다음, 피고인이 4번을 드나들면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총 9분 43초가량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위력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들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통신실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통신실에 진입하려고 한

만일 특별한 일 없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과민 반응에 의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일이 없다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통신실을 둘러보았을 뿐이라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 박○○과 현장에 있던 김○○, 양○○(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리가 계속되고 있으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는 식으로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 4.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의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508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진입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측에 상황을 묻자 그 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이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 통신시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입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 없이 촬영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 순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을 향하여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이 ‘비리가 계속되고 있으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사전 약속 하에 이 사건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김○○과 SH공사 직원인 남○○ 등을 만나 이 사건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 2층에서 회의를 하던 중 김○○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러 그 과정에서 김○○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 1층에 있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박○○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심 증인 김○○ 역시 위와 같이 2층에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비리를 저질렀다. ■■■■■’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의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와 김○○을 따라 이 사건 관리 사무소에 들어갔다가 40초만에 나온 뒤 다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이 사건 관리 사무소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통신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박○○ 등이 통신실은 출입제한구역임을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면서 30분 동안 계속하여 위 통신실의 출입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처음 들어간 다음 40초만에 다시 나왔고, 곧바로 다시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1분여가 지나 또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을 비웃어 모멸감에 곧바로 밖으로 나왔고 녹음을 준비하여 다시 들어갔다고 변소하고 있다. 박○○은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들어오자 곧바로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녹취 파일에는 박○○이 ‘피고인이 동의 없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통신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박○○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와 같이 1분여만에 다시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온 점, 이에 대하여 박○○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말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라. 피고인이 잠시 뒤 다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1분여 뒤 밖으로 나오고 또다시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6분 가량 머물러 있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당시 김○○, 박○○이 전기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나온 한전 직원과 업무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그 동안 옆에서 별다른 말 없이 있다가 전자식계량기로 바꾸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 다행이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등으로 혼잣말을 하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마. 이후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밖으로 다시 나왔고, 경찰관이 와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들은 다음 다 같이 통신실을 보자면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으며, ██████████

██████████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방해의 위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박○○ 등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

██████████ 그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과정 및 횡수 등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박○○ 등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엽 \_\_\_\_\_

                 판사      한재상 \_\_\_\_\_

                 판사      주진오 \_\_\_\_\_